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11. 12 선고 2023가단3501(본소), 2024가단776(반소) 판결
[대여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2. 4. 20. 피고에게 5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중 46,000,000원에 관하여는 이자 연 12%, 상환기간은 36개월(매월 1,280,000원씩 2022. 5. 20.부터 2025. 6. 20.까지 분할상환)로 정하고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 전부를 일시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22. 9. 25.부터 2024. 1. 3.까지 원고에게 합계 4,6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여금 46,000,000원에 대하여 2회분 이상의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 46,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원고는 2018. 2. 1. C 명의로 ‘D’를 설립하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E의 제품을 배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2) 원고는 2018. 12. 1. F에게 화물운송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업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2020년경 화물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를 설립함에 따라 G이 'D'의 운송용역 업무를 그대로 승계하고 2020. 12. 1. E와 사이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22. 4. 20. F로부터 F와 G 사이의 2020. 12. 1.자 화물운송업 하도급계약에 따른 물류운송권을 양도받으면서 같은 날 F에게 양수도대금으로 52,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류운송권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반소 청구원인 및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의 주장

1)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주장

피고는 F와 사이에 이 사건 물류운송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지급할 양수도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 사건 물류운송권 양수도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체로 체결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알선하여 준 화물운송 수량은 당초 원고가 설명한 것과 달리 매우 저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류운송권 양수도계약의 중요 사항인 물류운송 수량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고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하거나, 물류운송 수량에 관한 정지조건이 불성취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을 구할 수 없고, 오히려 같은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4,6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채무감축합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을 20,000,000원으로 감축하여 20개월간 분할변제받기로 하는 채무감축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초과하여 변제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1) 계약의 무효,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물류운송권 양수도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G이 위탁할 물류운송 수량에 관한 내용을 기망하였거나, 물류운송 수량에 관한 조건이 이 사건 물류운송권 양수도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되었거나 이를 정지조건으로 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물류운송권 양수도계약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당사자는 물론 계약의 내용 및 목적이 다르고 두 계약이 성질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법인과 그 대표자의 법인격은 엄연히 준별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물류운송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화물운송 업무를 위탁하는 G과 동일한 권리나 의무를 지닌다고 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물류운송권 양수도계약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을 다룰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물류운송권 양수도계약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채무감축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채무 46,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감축하되 이를 20개월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대여금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취지로 확정적인 채무감축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소영